

전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5122 판결 [공사대금반환 청구 등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6. 16.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20. 6. 2. 선고 2019가소202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시설하우스 설치공사계약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중순경 피고(대리인 C)에게 김제시 D 지상에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605,000원(김제시 보조금 7,920,000원 포함), 공사기간 2019. 7. 31.까지로 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9. 6. 24. 10,000,000원, 2019. 6. 25.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2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9,613,847원 상당의 농업용 파이프를 가져다 놓았고, 2019. 7. 4. 굴삭기로 터파기 공사를 하고 55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 7. 8. 이 사건 공사현장에 240,000원 상당의 차광망 1개를 가져다 놓았다.

라. 피고의 대리인 C은 2019. 7. 10. 원고에게 천장 개폐시설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9. 7. 13. C에게 전화로 공사를 독촉하였고, C은 기존 인부인 E이 돈을 안 준다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 다른 인부를 섭외 중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바. 원고는 2019. 7. 14. C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도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같은 날

09:53경 오늘 자정까지 연락이 없을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C은 2019. 7. 15.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19. 7. 17.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아. 원고는 2019. 7. 18. 원고의 F 사무실에서 C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C에게 시설하우스 구조의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며, C은 2019. 7. 29. 원고에게 73,822,000원 상당의 원가계산서(견적서)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액된 견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2019. 7. 9.부터 2019. 7. 12.까지, 2019. 7. 14.부터 2019. 7. 15.까지, 2019. 7. 17.부터 2019. 7. 21.까지, 2019. 7. 24.부터 2019. 7. 28.까지 비가 내렸다.

차. 원고는 2019. 8. 7.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9. 8. 12.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 후에도 원고는 2019. 8. 14. 및 2019. 8. 23. 피고에게, 피고는 2019. 8. 19. 및 2019. 8. 28.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4, 7,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9 내지 26, 갑 제12호증, 을 제1, 2, 3, 4, 6, 9호증,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당한 금액의 농업용 파이프를 가져다 놓았고, 굴삭기로 터파기 공사를 하였으며, 그 후 비가 내려 며칠 동안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G과 만나 대화한 이후에 시설하우스 구조의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제시한 견적금액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